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특허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기획 업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9명, 7급 4명) 중 1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3명)은 증원하고, 9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8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기술유출 대응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식재산 관련 범죄 수사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지식재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7일에서 2028년 7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12명(5급 1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과장급 정원(3급 또는 4급)을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0.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 분야 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제9조제2항 중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상표특별사법경찰과·국제협력과”를 “지식재산보호분석과·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상표특별사법경찰과·국제협력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으로, “팀장”을 “각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따른 범죄(이하 “지식재산범죄”라 한다)의 수사 총괄·조정 및 지도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재산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지식재산보호정보”라 한다)의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2. 지식재산보호정보의 수집·분석·검증 및 공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식재산범죄의 첩보 수집 및 이와 관련된 수사·내사

4. 기술자문 총괄·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지식재산보호정보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제5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가목·나목 및 마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침해범죄”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범죄(이하 “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따른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다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유출범죄”라 한다)

4.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6. 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⑥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유출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유출범죄 및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유출범죄에 기술침해범죄, 상표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 중 하나 이상의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과학수사의 기획·지도 및 기법 연구·개발

6.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지원

7. 기술유출범죄 수사사건의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8.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첩보 수집·검증·수사 관련 예산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⑦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에 기술침해범죄, 기술유출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6.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중전의 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침, 수사절차 적법성·피의자 인권 보호 기준 및 수사실적지표의 수립·운영·점검
2.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3. 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통제·보안 관리
4. 지식재산범죄 수사 현장 지원
5.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훈련
6.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8. 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관련 사업 운영

9. 고소·고발·이첩 사건의 접수·상담·민원처리 및 지식재산범죄
의 통계 관리

10. 그 밖에 지식재산범죄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지식재산 정보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추진

제14조제3항 중 “딥러닝”을 “딥러닝, 특화모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을 “사물인터넷 단말, 사물
인터넷 매니징,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를 “속도제어, 교통제어 및 센
서제어”로 한다.

제17조제9항 중 “화학바이오분석”을 “융합계측”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을 각각 “5명(3급 또는 4급 5
명)”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영업비밀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
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1,608”을 “1,627”로 하고, 일반직 계 “1,606”을 “1,625”로

하며,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41”을 “43”으로,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74”를 “176”으로,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781”을 “786”으로,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18”을 “425”로,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66”을 “6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08”을 “1,627”로 하고, 일반직 계 “1,606”을 “1,625”로 하며,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41”을 “43”으로,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79”를 “181”로, 공업사무관 · 농

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815”를 “820”으로, 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378”을 “385”로, 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68”을 “71”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 보호분석과	8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2029년 3월 31일까지
아.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과	10명 (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2029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5항 중 “2026년 7월 27일”을 “2028년 7월 27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

조제3항 중 “2026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8월 31일”을 “2028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8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을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9년 4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7]

지식재산처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1. 제2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7
일반직 계	7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7

2. 제27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6월 29일)

총계	9
일반직 계	9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6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지식재산 기본법」 제3 <u>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 분</u> <u>야 정책동향 조사·분석 및 관</u> <u>련 정책의 수립·추진</u>
9. (생 략) ④ ~ ⑦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생 략) ②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 재산보호정책과· <u>기술디자인특</u> <u>별사법경찰과·상표특별사법경</u> <u>찰과·국제협력과</u> 및 부정경쟁 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 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하고, <u>팀장은 과학</u> 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 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현 행과 같음) ② ----- ----- <u>지식재산보호분</u> <u>석과·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u> <u>과·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u> <u>상표특별사법경찰과·국제협력</u> <u>과·지식재산보호기준팀</u> ----- ----- <u>각 팀장</u> ----- ----- ----- ----- -----

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
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8. ~ 12. (생략)

<신설>

-----.

③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
호의2에 따른 범죄(이하 “지식
재산범죄”라 한다)의 수사 총
괄·조정 및 지도

8. ~ 12. (현행과 같음)

④ 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의 산업재산 정보를 포
함하며, 이하 “지식재산보호정
보”라 한다)의 분석에 관한 계
획 수립·추진

2. 지식재산보호정보의 수집·
분석·검증 및 공유(「산업재

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식재산범죄의 첩보 수집 및 이와 관련된 수사·내사

4. 기술자문 총괄·지원 및 유관 기관 협력

5. 그 밖에 지식재산보호정보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

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2의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가목·나목 및 마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침해범죄”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범죄(이하 “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

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규정
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
라 한다)가 복합된 범죄에 대
한 수사

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
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
건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
· 관리

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
련 법령·제도의 운영

6.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8.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9. 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
업 운영

10.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홍보

11.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법
죄 수사에 관한 사항

<신 설>

해범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가 복합
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따른 범죄(이하 “상표침해
범죄”라 한다)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
다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
술유출범죄”라 한다)

4.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
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
범죄 수사사건의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6. 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
자인침해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⑥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유출범죄 관련 수사계획

⑤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의 수립·시행

2. 기술유출범죄 및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
항 각 호에 규정된 기술과 관
련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
사

3. 기술유출범죄에 기술침해범
죄, 상표침해범죄 또는 디자인
침해범죄 중 하나 이상의 범죄
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국내
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과학수사의 기획·지도 및 기
법 연구·개발

6.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지원

7. 기술유출범죄 수사사건의 상
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8.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첩보
수집·검증·수사 관련 예산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기술유출범죄의 수사
에 관한 사항

⑦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 2의2. 상표침해범죄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삭 제
 8.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9.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홍보
 10.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에 기술침해범죄, 기술유출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6.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⑧ -----
-----.

1. · 2. (생략)

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
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 15.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15. (현행과 같음)

⑨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침, 수사
절차 적법성·피의자 인권 보
호 기준 및 수사실적지표의 수
립·운영·점검

2.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3. 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
통제·보안 관리

4. 지식재산범죄 수사 현장 지원

5.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
훈련

6.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
금 제도 운영

8. 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관련
사업 운영

9. 고소·고발·이첩 사건의 접

⑦ (생 략)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① · ② (생 략) ③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u><신 설></u> 23. ~ 27. (생 략) ④ ~ ⑧ (생 략)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① · ② (생 략)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	<u>수·상담·민원처리 및 지식재산범죄의 통계 관리</u> 10. 그 밖에 지식재산범죄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2. (현행과 같음) 22의2. <u>지식재산 정보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추진</u> 23. ~ 2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딥러닝, 특화모델</u> ----- ----- ----- ----- ----- -----. ④ -----
---	--

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⑥ (생략)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 ⑫ (생략)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① ~ ⑧ (생략)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화학바
이오분석,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생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 사물인터넷 단말, 사물인터넷 매니징,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 플랫폼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속도제어, 교통제어 및 센서 제어 -----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융합계측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원 중 <u>3명(3급 또는 4급 3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7조(한시정원) (생 략) <u><신 설></u>	----- <u>5명(3급 또는 4급 5명)</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영업비밀 침해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 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 산처에 둔다.</u>
총리령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 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부정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 ----- ----- ----- ----- ----- -----

경쟁조사팀은 2026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⑥ ~ ⑫ (생략)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12
명(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
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
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
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2
명)은 2026년 8월 30일까지 존
속하고, 2026년 8월 3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2의 정원 12명(공업주사·농
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
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
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

----- 2028년 7월 27일-----
-----.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2028년 8월 30일까지 존

속하고, 2028년 8월 31일 -----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2명)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5명(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명)으로 조정한다.

[illegible]

2029년 4월 1일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
명)으로 본다.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08</u>	<u>1,627</u>	+19
·	·	·	
·	·	·	
일반직 계	<u>1,606</u>	<u>1,625</u>	+19
·	·	·	
·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u>41</u>	<u>43</u>	+2
·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 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 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 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u>174</u>	<u>176</u>	+2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 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 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u>781</u>	<u>786</u>	+5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 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 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 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 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 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 주사 또는 사서주사	<u>418</u>	<u>425</u>	+7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 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 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 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 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			

주사보	<u>66</u>	<u>69</u>	+3
•	•	•	
•	•	•	

[별표 2]

지식재산처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08</u>	<u>1,627</u>	+19
·	·	·	
·	·	·	
일반직 계	<u>1,606</u>	<u>1,625</u>	+19
·	·	·	
·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u>41</u>	<u>43</u>	+2
·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 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 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 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u>179</u>	<u>181</u>	+2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 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 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	<u>815</u> .	<u>820</u> .	+5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 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 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 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 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 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행정 주사 또는 사서주사 .	<u>378</u> .	<u>385</u> .	+7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 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 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 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 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 주사보	<u>68</u>	<u>71</u>	+3
·	·	·	
·	·	·	